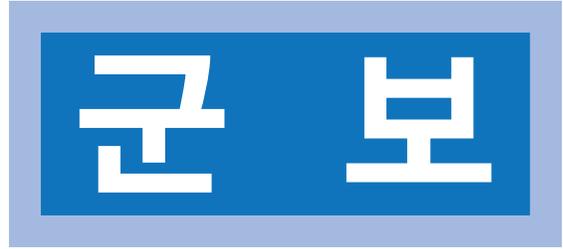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정기 제373호 2017. 4. 3(월)

입 법 예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210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1
장수군 공고 제 2017 - 211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11

공 고

장수군 공고 제 2017 - 209호 도로지정공고	28
-----------------------------------	----

회 람									
--------	--	--	--	--	--	--	--	--	--

장수군 공고 제 2017 - 210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조례

⇒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안 제2조(정의)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명확히 함

다. 안 제3조(관리·운영) ~ 안 제14조(전용사용자의 책임)

장수군 승마유원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사용, 전용사용, 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전용사용료 환급, 전용사용자의 책임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제15조(시행규칙)

사용료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3.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축산과-5052(2017. 3. 1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중앙관서 등 사전 승인 필요 여부 : 부

○ 기 타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2017. 3. 13. ~ 3. 17.)

○ 기타 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행정지원과-5568(2017. 3. 17.)]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장수군 축산과(전화 : 063-350-5477, FAX : 063-350-548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장수군청 축산과 말산업팀
(전화 : 063-350-54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입법예고 : 붙임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승마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승마유원지(이하 “승마유원지”라 한다)”란 장수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체험장(이하 “승마체험장”이라 한다),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이하 “승마레저체험촌”이라 한다) 및 장수 승마로드(이하 “승마로드”라 한다)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방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승마체험장 시설”이란 승마체험장의 체험마장, 외승코스, 마방, 트로이 목마,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승마레저체험촌 시설”이란 승마레저체험촌의 말 역사체험관, 말 조각공원, 게르(숙박시설), 관리사무소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5. “승마로드 시설”이란 쌈지공원, 잔디도로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승마유원지의 각종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사용”이란 승마유원지의 각종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

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유원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승마유원지 각종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승마유원지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승마유원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승마유원지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② 군수는 승마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승마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사용) ① 일반사용자는 군수가 발행하는 이용권을 구매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권 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사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마유원지의 각종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 및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 그 밖에 승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전용사용 신청) ① 승마유원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 신청(또는 전용사용 변경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허가(또는 변경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 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용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유원지 사용 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공공행사
2. 제5조제2호의 체육경기
3. 교육관련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

제8조(전용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승마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공공행사, 체육경기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전용사용 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0조(사용 제한) 군수는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2. 전염병 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제11조(사용료) ① 승마유원지의 각종 시설 사용료(부가가치세법 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승마유원지의 숙박시설 예약 및 예약금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각종 시설 사용료(숙박시설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으며, 감경사항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사용료 감경

가. 주민등록이 장수군에 되어 있는 자, 전북 투어 패스 제시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여행주간 기간, 장수군 시티투어 탑승자 : 100분의50 감경

나. 20인 이상 단체사용자 : 100분의30 감경

2. 전용사용료 면제 : 제5조제1호의 공공행사, 전국 및 국제경기대회, 학교체육행사

② 감면 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용사용료 환급) ① 전용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군수는 전용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료 환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전용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전에 허가된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마장 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승마장시설 사용료	150,000	기준 : 1일당, 8시간
마방 사용료	50,000	1일(배합사료 및 건초 미 제공)

2. 승마장 시설 자마회원 사용료(제11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	본인외1인	본인외2인	
요금(1개월)	400,000	600,000	800,000	1인추가시 200,000원/월 (최대 본인 포함 3인/1두)

① 시설사용 및 마필관리, 사료비 포함

3. 승마장 시설 및 승마체험장 시설 기간 · 일일 사용료(제11조 관련)

가. 기간 이용자

(단위 : 원)

구 분			기간별 사용료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승마 체험 시설	성인	관외	300,000	810,000	1,440,000	1일 기승 (30분)
		관내	150,000	405,000	720,000	
	청소년	관외	250,000	675,000	1,200,000	
		관내	125,000	337,000	600,000	
	어린이	관외	200,000	540,000	960,000	
		관내	100,000	270,000	480,000	

① 기간 이용 감액요율 : 3개월 10%, 6개월 20%

나. 일일 이용자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승마체험시설 (원형마장)	성 인	개인	25,000
		단체	17,000
	청소년	개인	18,000
		단체	12,000
	어린이	개인	12,000
		단체	8,000
승마체험시설 (체험주로)	성 인	10,000	1회기승(30분)
	청소년	7,000	
	어린이	5,000	
승마로드	성 인	개인	50,000
		단체	35,000
	청소년	개인	40,000
		단체	28,000
	어린이	개인	30,000
		단체	21,000
			본인 자마를 가져 오거나 군소유의 말을 이용하는 것 모두포함. (1일 8시간기준)

4. 말역사체험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말역사체험관	성 인	개인	3,000
		단체	2,500
	청소년	개인	2,000
		단체	1,500
	어린이	개인	1,000
		단체	500

5. 게르(숙박시설) 및 야영텐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게르(숙박시설)	1일 1동	60,000	
야영장	야영텐트	10,000	
전기시설		5,000	야영장 전기시설사용시(게르제외)

- ① 사용기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 추가징수
 ② 1일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 또는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성인 : 19세 이상인 사람
 단체 :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장수군 공고 제 2017 - 211호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장 수 군 수

1. 개정이유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나. 안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승마유원지시설 이용시간 및 휴장 일을 규정

다. 안 제3조(이용권 등)

승마유원지 시설 이용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안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승마유원지 시설 전용사용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안 제5조(예약) ~ 안 제6조(예약금의 환급)

승마유원지 시설 시설물 사용의 예약,
예약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바. 안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 안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승마유원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
전용사용료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3. 참고사항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축산과-5052(2017. 3. 13.)]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중앙관서 등 사전 승인 필요 여부 : 부
- 기 타 :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2017. 3. 13. ~ 3. 17.)
- 기타 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행정지원과-5568(2017. 3. 17.)]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수군수(참조 : 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5

장수군 축산과(전화 : 063-350-5477, FAX : 063-350-5480)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군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장수군청 축산과 말산업팀
(전화 : 063-350-54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붙임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장수군 장수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장수군 승마유원지(이하 “승마유원지”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

② 승마유원지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④ 승마유원지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⑤ 군수는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 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등) ①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유원지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유원지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①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예약) 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

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 환급) 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승마체험장 일일 이용권

←2cm→ ← 5 cm → ← 5 cm → ← 9 cm →		
장수승마체험장 이용권 (○ ○) NO: 호 구분: 원 금액: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수군수	장수승마체험장 이용권 (○ ○) NO: 호 구분: 원 금액: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장수군수	대표적 사진 (승마체험장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승마장 일일 이용권

←2cm→ ← 5 cm → ← 5 cm → ← 9 cm →		
장수승마장 이용권 (○ ○) NO: 호 구분: 원 금액: 원 20 . . . 장수군수	장수승마장 이용권 (○ ○) NO: 호 구분: 원 금액: 원 20 . . . 장수군수	대표적 사진 (승마장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방으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승마레저체험촌 일일 이용권

←2cm→ ← 5 cm → ← 5 cm → ← 9 cm →		
장수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 ○) NO: 호 시설명: 게르. 말역사체험관 구분: 원 금액: 원 20 . . . 장수군수	장수승마레저체험촌 이용권 (○ ○) NO: 호 시설명: 게르. 말역사체험관 구분: 원 금액: 원 20 . . . 장수군수	대표적 사진 (승마레저체험촌 전경 등)

- 주) 1.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장수승마체험장 기간 이용권

(앞면)

장수승마체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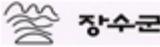
사 진

이용기간 : 20 ~ . . .
 성 명 : 0 0 0



※ 규격 : 가로 8.6cm × 세로 5.4cm

(뒷면)

장수승마체험장 

○ 이용시간(시행규칙에 의거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00 ~ 17:00

○ 이용안내

- 장수승마체험장 이용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 ·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74 전화 063)000-0000

장수승마장 기간 이용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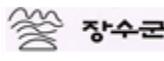
(앞면)

장수승마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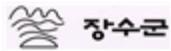
이용기간 : 20 ~

성 명 : 0 0 0



※ 규격 : 가로 8.6cm × 세로 5.4cm

(뒷면)

장수승마장 

○ 이용시간(시행규칙에 의거 이용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3월 ~ 10월	09:00 ~ 18:00	11월 ~ 2월	09:00 ~ 17:00

○ 이용안내

- 장수승마체험장 이용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승마로 74 전화 063)000-0000

[별지 제2호서식]

() 이용권 수불부

()

일 자	적 요	수 입(매)	지 출(매)	잔 량(매)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주) 1. ()에는 성인개인, 성인 단체 또는 감면, 청소년개인, 청소년단체 또는 감면, 어린이, 어린이단체 또는 감면, 마방으로 구분표기

[별지 제3호서식]

() 이용 일계표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사업장 명칭 : 장수 () 년 월 일

종 류	구 분	일 계			누 계			비 고
		이용객 (명)	금 액(원)		이용객 (명)	금 액(원)		
			카드	현금		계	카드	
	합 계							
이 용 객	성인	개인						
		단체						
		감면						
	청소년	개인						
		단체						
		감면						
	어린이	개인						
		단체						
		감면						
	무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						
		마차체험						
		마 방						

[별지 제4호서식]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신청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사용인원	명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허가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사용인원	명
		20 년 월 일 시까지			
허가조건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허가사항	당초 허가내용			변경 신청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기타사항						

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승마유원지 전용사용 변경 허가서 (제5조 관련)					
사용자	주 소				전화번호
	단 체 명 (법인 또는 단체인경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목적					
허가사항	당초 허가내용			변경 허가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기타사항					
<p>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수 군 수</p>					

[별지 제8호서식]

전용사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구분	사용료	감면액	감면사용료
감면사유 :			
<p>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장수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전용사용료 환급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			
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구분	납부액	반환액	비고
사용료 환급 신청사유 :			
<p>장수군 승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환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p>장수군수 귀하</p>			

장수군 공고 제 2017 - 209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지정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장 수 군 수

○ 지정일자 : 2017년 03월 17일

○ 지정내역

위 치	도로길이	도로너비	도로면적	이해관계인	비고
장수군 장수읍 장수읍 440-5	43.86m	6.0m	268.0㎡	조윤정 김종진 장성일 김한중	동의

군보발행안내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게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게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게재 의뢰 방법 : 게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